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2026. 1. 27 개정



제 개정연혁

- 2008년 1월 14일 제정
- 2009년 6월 25일 개정
- 2016년 12월 20일 개정
- 2017년 6월 28일 개정
- 2020년 12월 7일 개정
- 2024년 1월 23일 개정
- 2024년 11월 12일 개정
- 2026년 1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원 협회'라 함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한다)에 소속된 회원 축구협회를 의미한다. <개정 2026.01.27.>
 2. '비 AFC 회원 협회'라 함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한다)에 소속된 회원 축구협회이면서, AFC 이외의 대륙연맹에 소속된 회원 축구협회를 의미한다. <개정 2026.01.27.>
 3. '대회'라 함은 국제대회를 의미한다.
 4. '국내개최 대회'라 함은 FIFA 소속 회원 국가 중 3개국 이상이 출전하고, 출전 국가들의 축구협회에 소속된 국가대표팀 또는 클럽팀(학원팀 포함)이 참가하며,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전체 팀의 수를 기준으로 국외팀 참가 비율이 12세 이하 대회는 최소 25% 이상, 13세 이상 대회는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5. '국외개최 대회'의 정의는 FIFA, AFC 또는 개최국가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6. '경기'라 함은 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FIFA 회원 축구협회에 소속된 국가대표팀 또는 클럽팀(학원팀 포함) 간의 국제경기를 의미하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연습경기'를 포함한다. <개정 2026.01.27.>
 7. '연습경기'라 함은 사업수입의 목적이 없고, 각종 시상을 하지 않으며, 공식 경기로 인정되

지 않는 단순한 훈련을 위한 경기를 말하며, 어떠한 공식 명칭(대회, 페스티벌, 경기 등)도 사용할 수 없는 경기를 말한다.

8. '회원'이라 함은 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에 따른 '정회원' 및 '준회원'을 의미하며, 단체 또는 개인으로 나뉜다. <개정 2026.01.27.>
9. '비회원'이라 함은 협회 정관에 따른 '정회원' 및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한다.
10. 'A' 대표팀'이라 함은 FIFA 회원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을 의미한다. <개정 2026.01.27.>
11. '선발팀(스크래치 팀)'이라 함은 각기 다른 FIFA 회원 축구협회의 최상위 리그 클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의미한다.
12. '국내선발팀'이라 함은 1개 FIFA 회원 축구협회의 클럽팀(학원팀 포함)에 등록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13. '유소년팀'이라 함은 만 6세~12세 이하로 구성된 팀이다.
14. '해당 연맹'이라 함은 출전팀 중 하나 이상이 소속된 급별 연맹(프로팀의 경우 프로연맹, 대학팀의 경우 대학연맹, 여자팀의 경우 여자연맹, 풋살팀의 경우 풋살연맹 등)을 의미한다.

② 대회 및 경기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1급(Tier 1) : FIFA 회원 축구협회의 'A' 대표팀 또는 선발팀을 포함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의미한다. 오직 FIFA만이 1급 국제경기를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선발팀: 동일하지 않은 협회의 최상위 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예: 세계올스타, 아시아 올스타 등)

2. 2급(Tier 2) : 한 개의 'A' 대표팀, 그 외 연령별 대표팀, 국내선발팀 또는 FIFA 회원 축구협회의 최상위 리그에 참여하는 클럽팀을 포함하는 대회 및 경기를 의미한다. <개정 2026.01.27.>

■ 연령별대표팀: FIFA 회원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연령별 대표팀 (U-20, U-18 등)

■ 국내선발팀 : K리그 선발팀, 시도협회 선발팀, 전국연맹 선발팀 등

■ 최상위리그에 등록된 팀: K리그1, WK리그, FK리그 등

[비고] 경기를 하는 두 팀 중 한 팀이라도 위 항목에 해당 되면 2급에 속함

(예: A국가의 A대표팀 vs B국가의 U-23 대표팀 / K리그1 팀 vs 스페인 2부 리그 팀 / K2리그 팀 vs 태국1부 리그 팀)

3. 3급(Tier 3) : 1급 또는 2급 대회 및 경기를 제외한 모든 대회 및 경기를 의미한다.



(예: K2리그 팀 vs 태국 2부 리그 팀 / K3리그 팀 vs 일본 2부 리그 팀 / 국내 아마추어 팀 vs 스페인 3부 리그 팀)

- ③ 단일 경기 중 단순 훈련 목적 하에 진행되는 경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회(경기)가 개최되는 국가협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 1. 경기티켓 판매가 없고 방송이 되지 않는 경기로서 무관중 등 비상업적 경기 <개정 2026.01.27.>
 - 2. 정식 경기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기(30분 3쿼터 경기 등)
 - 3. 심판진이 운영하지 않는 자체 훈련을 위한 경기
- ④ 대회 및 경기 개최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1. ‘주최’라 함은 대회 또는 경기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단체를 말한다.
 - 2. ‘주관’이라 함은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 또는 경기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3. ‘후원’이라 함은 대회 또는 경기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목표)

- 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 및 국제대회에 대한 승인,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관리한다. <개정 2026.01.27.>
- ②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회원 협회, 비회원 협회, 클럽 팀, 국내 팀 및 스크래치 팀과 관련된 국제경기 및 국제대회의 체계적인 관장을 한다. <개정 2026.01.27.>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FIFA, AFC 또는 다른 대륙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를 제외한 모든 국제경기 및 국제대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6.01.27.>
 - 1. 국내개최 대회 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 개최의 신청,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2. 국외개최 대회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의 참가 승인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3. 본 규정은 풋살 및 비치사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FIFA 집행위원회 또는 AFC 집행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승인한 국제경기 또는 국제대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6.01.27.>

제4조 (목적) <개정 2026.01.27.>

본 규정의 목적은 관련 감독 기구가 국제경기 및 국제대회를 관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경기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청렴, 윤리 및 페어플레이를 증진하며, 경기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경기대회선수·임원 및 회원 협회의 청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수단이나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제5조 (협회의 의무)

- ① 협회는 국제경기 및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본 규정, FIFA 규정 및 모든 관련 대륙연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② 협회는 국내 지역에서 국제경기 또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회원 협회, 비 AFC 회원 협회, AFC, 기타 대륙연맹 및/또는 FIFA에 해당 경기 또는 대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③ 협회는 다른 회원 협회, 비 AFC 회원 협회, AFC, 기타 대륙연맹 또는 FIFA로부터 국제경기 또는 국제대회의 승인 요청과 관련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④ 어떠한 사유로든 국제경기를 위해 지정된 심판이 변경되는 경우 참가 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는 주최 회원 협회의 공식 담당자가 서명한 보고서로 문서화하여 관련 회원 협회 및/또는 비 AFC 회원 협회, AFC, 기타 대륙연맹 및/또는 FIFA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제6조 (신청자의 의무)

- ① 승인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신청 단체 및 개인은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진위를 보장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② 승인 이후 주최, 주관, 후원사, 업무 대행사, 참가팀 등 상호간 대회 및 경기 운영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그 해결은 해당 계약을 따른다. <개정 2026.01.27.>

제2장 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및 참가 범위

제7조 (비승인 대회 및 경기 참가 금지)

- ① 회원은 FIFA 및 각 대륙연맹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장 대회 또는 경기 개최의 신청 및 승인



제8조 (대회 또는 경기 개최 자격 및 절차)

① 대회 또는 경기 개최의 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원단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등록팀)는 아래와 같이 대회 또는 경기 개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 <개정 2026.01.27.>

나. 비회원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 <개정 2026.01.27.>

2. 비회원단체는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으로 개최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회원 또는 비회원단체가 FIFA 회원 축구협회의 최상위 리그에 속한 팀을 초청하여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이상의 후원사(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회가 인정한 단체)를 공동주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중견기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회가 인정한 단체)은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01.27.>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4. 공동주최자는 경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정산, 세금 및 법률 관계의 처리 등 주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며, 대회 또는 경기 운영과 관계된 모든 계약 내용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1.27.>

②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개최 신청을 해야 한다.

1. 회원단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등록 팀)가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항을 준수하여 협회에 대회 또는 경기 개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2. 비회원단체가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 목에 따라 협회, 회원단체 중 시도협회 또는 전국연맹에 대회 또는 경기 개최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협회 또는 전국연맹은 비회원단체의 승인 요청 사항을 검토 후 제10조 및 제11조의 사항을 준수하여 협회에 최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가. 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협회에 신청

나. 시도축구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시도축구협회에 신청

다. 전국연맹과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전국연맹에 신청

라. 비회원단체 단독으로 개최: 해당 연맹 및 개최지 관할 시도협회의 동의서 첨부 후 신청. 단, 협회의 판단에 따라 축구 발전에 저해가 될 경우 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 3. 회원 또는 비회원단체가 각급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와 별도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 ③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회원은 협회 또는 주최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신청기한)

- ① 대회 개최 신청기한 : 해당 대회 개막 75일 전까지 협회에 제10조의 승인 신청 서류 제출
- ② 경기 개최 신청기한 : 경기 개막 60일 전까지 협회에 제10조의 승인 신청 서류 제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기한까지 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단체는 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회는 개막 최소 40일, 경기는 개막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6.01.27.>
- ④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협회가 판단할 경우 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신청 기한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최초 신청기한(대회 75일, 경기 60일 전) 기준에서 지연 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신청지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01.27.>
- ⑥ 매년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6.01.27.>

제10조 (승인 신청 서류)

- ①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승인 신청 공문
 2. 승인 신청서(별지 1. 대회 또는 경기 승인 신청서)
 3.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별지 2.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
 4. 신청자 이행각서(별지 3. 신청자 이행각서)
 5. 대회 또는 경기 규정
 6. 참가팀 리스트 (국문, 영문)
 7. 개최지 관할 광역 시도협회 개최 동의서 또는 승인 공문
 8. 해당 연맹의 개최 동의서 또는 승인 공문(해당 연맹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개최지 경기장 시설물 사용 동의서 또는 승인 공문
 10. 대회 또는 경기 협약서
 11. 참가팀 소속 국가 축구협회의 참가신청서



(별지 5. FIFA/AFC Participating form Tier 1, Tier 2, Tier 3)

* 참가팀 소속 국가 축구협회가 작성해야 한다.

12. 참가팀 소속 대륙연맹 참가 승인서

* 같은 대륙연맹(AFC) 소속인 경우는 해당 서류 필요 없음

13. 후원단체의 후원 협약서 또는 후원 확인 공문

14. 사업자등록증

- ② 국내개최 대회에 국내 초, 중, 고 및 대학의 팀 또는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 학교장 확인서 또는 학교 측의 승인 공문을 참가팀 또는 선수로부터 받아 협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승인)

- ① 협회는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국제기관(FIFA 또는 AFC)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다.
- ② 협회는 필요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단, 최종 승인 전까지 대회 또는 경기 관련 홍보, 마케팅 활동은 할 수 없다.
- ③ 협회는 입장권이 판매되는 대회 또는 경기에 대해 승인 전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신청단체에 부과할 수 있다. 예치금은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입장료 예상 수입액의 30%로 하며, 협회가 필요시 대회 규모 및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예치금은 주최사 또는 공동주최사가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협회는 2년 이상 동일 급의 대회 또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단체에 한하여 예치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④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에 결과보고서 및 제반 운영 비용(입장료 정산 포함)의 정산 증빙자료 등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협회는 해당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최단체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협회는 필요시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해 외부 회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1.27.>
- ⑤ 협회는 대회 또는 경기의 승인을 포함하여 주최, 주관 및 후원 등의 기관이 될 수 있다.
- ⑥ 신청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개최의 승인을 득한 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관(FIFA 또는 AFC) 및 협회의 추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⑦ 협회는 FIFA, AFC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⑧ FIFA, AFC, 각 대륙연맹, 협회 또는 비 AFC 회원 협회에서는 승인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01.27.>



제12조 (승인의 취소, 조정 및 거부)

- ① 협회는 필요시 협회의 판단에 따라 승인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② 협회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승인의 거부,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1. 이행각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제출서류 위조, 대회 또는 경기 준비 미흡, 출전팀 또는 선수의 미출전 등)가 발생하는 경우
 - 2. 각 급 국가대표팀 소집 일정 및 대회(경기) 일정, 국내대회, 리그 일정 등과 중복이 될 경우 <개정 2026.01.27.>
 - 3. 일정 중복이 아닌 경우에도 축구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승인 신청단체가 제8조 및 제9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 하는 경우 <개정 2026.01.27.>
 - 6. 승인 신청단체 또는 개인이 과거에 본 규정을 위반 및 축구 발전을 저해한 경우
- ③ 위 사항을 위반한 승인단체 및 개인은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개정 2026.01.27.>

제13조 (축구진흥기여금)

- ① 비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경기)에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입장료 총 수입액의 2%(부가세 포함)를 축구진흥기여금으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② 주최단체 또는 공동주최자는 입장료 총 예정 수입액의 2%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축구진흥기여금을 대회(경기) 승인 전 협회가 지정한 날까지 협회 지정 계좌로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동일 급의 대회 또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단체는 축구진흥기여금을 대회(경기) 종료 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01.27.>
- ③ 주최단체는 대회(경기) 종료 후 21일 이내에 협회에 정산 완료된 입장료 총 수입액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대회(경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협회는 정산 완료된 입장료 총 수입액을 바탕으로 축구진흥기여금을 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추정 축구진흥기여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주최단체가 협회의 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추가 납부 하고,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협회가 주최단체에 환급한다. 협회는 축구진흥기여금의 정산이 완료된 후 정산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개정 2026.01.27.>
- ④ 주최단체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입장료 총 수입액의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협회는 대회(경기) 승인시 산정된 추정 금액을 바탕으로 축구진흥



기여금의 정산을 확정할 수 있으며 협회는 예치금에서 미납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제4장 대회 및 경기 준비

제14조 (조직위원회의 구성)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신청단체는 원활한 대회 또는 경기 운영을 위해 아래 각 호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조직위원회 구성은 각 대회 또는 경기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조직위원장 : 대회 또는 경기의 대표자로서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책임진다.
2. 부위원장 : 조직위원장을 보좌하여 대회 또는 경기 운영을 돕는다.
3. 공정위원회 : 대회 중 긴급 제재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공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공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4. 본부장 : 대회 또는 경기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아래와 같이 분야별 담당관을 배치·운영하며 필요시 각 경기장별 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7.>

- 경기담당관: 경기 진행 업무수행
- 심판담당관: 심판 활동 보조 업무수행
- 지원담당관: 시설, 물자의 조달 업무수행
- 안전담당관: 안전사고에 대비한 업무수행
- 시설담당관: 각종 시설의 관리 업무수행
- 의무담당관: 선수의 부상 등 의료 사고 관리 업무수행
- 홍보담당관 : 대회 홍보를 위한 업무수행
- 수송담당관 : 팀 이동을 위한 수송 업무수행
- 기타 : 대회 또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담당관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5. 경기감독관 :

- 주최단체와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을 협의한다.
- 경기장 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미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최단체와 협의한다.
- 경기를 관찰하고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각종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또는 주최단체 및 협회에 보고하고 조치한다.
- 필요시 양 팀의 임원, 경기진행요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 대회위원회 규정 또는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심판평가관 :

- 주최단체와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을 협의한다.
- 심판 활동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심판위원회 규정 또는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경비의 부담)

- ①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②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주관 및 후원자와 함께 경비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 (참가비의 징수 및 보조)

주최단체는 필요할 경우 참가팀으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참가팀에 대하여 참가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제17조 (주최 단체의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 ① 협회는 국내개최 대회 또는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게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참가팀의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주최단체는 보험 가입 여부와 선수 안전대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협회는 필요 시 주최단체에게 주최단체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 ③ 주최단체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곤란할 경우 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회 또는 경기 규정내 별도의 배상관련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④ 대회 또는 경기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 피해 등에 대하여는 주최단체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참가팀을 위한 지원)

주최단체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 참가팀을 위한 연습장(공간) 제공
2. 참가팀의 숙식, 교통편의 제공(계약 조건에 따라 왕복항공권 제공) <개정 2026.01.27.>
3. 조직위원회 및 기타 대회 관련 정보 제공
4. 참가팀에 대회 사용구 지원

제19조 (경기장 및 부대시설)

주최단체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경기장은 FIFA경기규칙 「규칙1-경기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등부 8인제의 경우 ‘8인제 경기 규칙’에 따른다.
2. 경기장은 협회가 인정한 천연 또는 인조 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기장의 숫자가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경우, 주최단체는 경기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특별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습장(공간)을 포함한 기타 소요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5. 경기장 Field of play 외 보조면적은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
 - 가. 잔디구역은 터치라인 및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안전구역은 터치라인 및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최단체는 경기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협회에 특별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경기장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6. 팀벤치
경기 중 팀 지도자와 대기 선수들이 앉을 팀별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
7. 선수 대기실
 - 가. 경기장마다 2개 이상의 선수대기실을 구비해야 한다.
 - 나. 동일 장소에서 2경기 이상 연속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다음 경기를 대기 중인 팀을 위해 2개 이상의 선수 대기실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 다. 대회 또는 경기가 흑서 및 흑한기에 개최되는 경우, 각 대기실에 냉·난방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 심판 대기실
경기장마다 최소 1개의 심판 대기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9. 샤워시설
경기장마다 2개 이상의 샤워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단, ‘3급’ 대회/경기의 경우에 샤워시설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10. 관람석
 - 가. 간이 관람석을 포함하여 경기장별 100석 이상 구비를 원칙으로 한다. 단, ‘3급’ 대회 또는 경기의 경우 50석 이상 의무 구비 및 100석 이상을 권장한다.
 - 나. 관람객의 출입 통로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선수단 출입구와 분리 차단되도록 한다.
 - 다. 대회 또는 경기가 흑서기에 개최되는 경우,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권장한다.
11. 진행본부석, 경기 감독관석, 운영요원석 및 미디어석
 - 가.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진행본부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심판, 운영요원 및 기자, 방송 중계요원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좌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1.27.>



다. 대회 또는 경기가 흑서기에 개최되는 경우, 진행본부석, 운영요원석 및 미디어석 그늘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 경기감독관석은 별도 독립적 공간으로 외부인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2. 인터넷 시설

가. 주최단체에서는 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의 보고서 작성 및 경기 정보 입력을 위해 경기장마다 2개 회선 이상의 유선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WIFI)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 시설 설치 제한 등 준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별도 대안에 대해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음향 및 영상시설

가.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나. 경기 결과를 표시하는 전광판 시설 구비를 원칙으로 한다. 단, '3급' 대회 또는 경기의 경우 간이 점수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4. 기타 편의시설

가. 선수단 및 관중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나. 관람객을 위한 매점 또는 급수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개정 2026.01.27.>

제20조 (숙박시설)

주최단체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선수단과 대회 또는 경기 관계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2. 대회 관계자와 참가팀이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회운영본부(조직위원회) 숙소를 별도로 지정한다.

제5장 대회 및 경기 운영

제21조 (대회 또는 경기의 운영)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의 대표단체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대회 또는 경기 운영을 관장해야 한다.

1.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승인을 득한 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관(FIFA/AFC) 및 협회의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개막일로부터 최소 1일 전까지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3. 대회 또는 경기의 운영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해야 한다.



4. 대회 개막 전 및 대회 기간 중 심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 <개정 2026.01.27.>

제22조 (경기 규칙)

- ① 대회 및 경기는 FIFA 경기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또는 경기의 경우 KFA 초등 8인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경기 개시 시간)

- ① 일일 첫 경기는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자 회의 시 참가 팀의 동의하에 경기 개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초·중·고 모든 학년 대회(저학년 대회 포함)는 야간 경기 개최를 의무로 하며, 경기는 17시 이후(18시 이후를 권장)로 개시하여야 한다. 단, 고지대 등 지역특성에 따라 평균온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대회위원회 결정에 따라 낮 시간에 경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제24조 (휴식)

- ① 선수의 피로 회복을 위해 경기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단,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조별 리그부터 본선 토너먼트 시작 전, 본선 토너먼트 시작부터 결승전 사이에는 각각 1일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25조 (대회 또는 경기 방식)

아래 각 호의 대회 또는 경기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대회규정에 표기한다.

1. 토너먼트 방식
2.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
3. 풀리그 방식
4. 단판 경기
5. 위 사항에 없는 기타 방식의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제26조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및 협회파견직원 운영)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및 협회파견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



1. 모든 대회 또는 경기의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및 협회파견직원 배정 및 파견 권한은 협회에 있다.
2. 협회는 필요시 개최지 시도협회에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및 심판 배정과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3.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및 심판의 파견비용은 본 규정 '별지 9'를 따른다.
4. 심판은 심판위원회 규정 및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1.27.>
5. 주최단체가 협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직원의 파견 비용은 본 규정 '별지 9'에 따른다.

제27조 (의료 지원)

- ① 주최단체는 환자발생에 대비한 구급차량 및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응급처치 가능자를 반드시 경기장에 배치해야 한다.
 1. 구급차량의 경우, 응급구조 물품 및 산소 호흡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동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는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2. 구급차량은 각 경기장별 1대 이상 배치하고, 예비용 일반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초등부 8인제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비용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차량 표시를 별도로 한다.
 3. 응급처치 가능자는 경기장별 1인 이상 배치한다.
 4. 경기장에 배치된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구급차량을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위 제2호 구급차량 외에 예비용 구급차량(1대) 및 응급처치 가능자(1명)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의료 지원자는 경기장에 설치된 의료 지원 석에 앉고, 구급차는 경기장 인근에 배치한다.
- ③ 주최단체는 들것조 활동을 위해 별도의 전담인원(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④ 경기 중 부상당한 선수의 치료비 부담 사항은 대회규정에 명기한다.
- ⑤ 제4항의 경기 중이라 함은 킥오프부터 경기 종료까지로 한다. <개정 2026.01.27.>
- ⑥ 주최단체는 경기장 인근에 지정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제28조 (시설 점검)

- ① 주최단체는 원활한 대회 또는 경기 운영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 ② 주최단체는 협회 담당자 및 경기감독관이 경기장 시설 및 안전 상태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미비한 사안 발생 시에는 협의를 통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제29조 (안전)

- ① 주최단체는 경기장, 훈련장, 숙박시설 및 수송 등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대회 또는 경기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책임을 다한다.
- ② 주최단체는 아래 각 호의 대회 또는 경기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모든 참가팀 선수 및 임원, 심판진 <개정 2026.01.27.>
 - 2. VIP 및 관련 단체 임직원
 - 3. 언론
 - 4. 후원사
 - 5. 관중 등 <개정 2026.01.27.>
- ③ 주최단체는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및 관중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④ 선수단의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관중과 분리해야 한다.
- ⑤ 대회 또는 경기 진행 본부석은 관중의 방해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⑥ 주최단체는 경기장 안전을 위해 치안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⑦ 응원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개정 2026.01.27.>
- ⑧ 주최단체는 사전에 경기장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⑨ 주최단체는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⑩ 주최단체는 동계 대회 개최 시 선수단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⑪ 주최단체는 하계 대회 또는 경기 개최 시 선수단 보호를 위해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대회 또는 경기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1. 경기 개시 90분 전 WGBT(체감 온도 지수)가 30°C가 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2. 경기감독관, 경기담당관, 심판이 당일 해당 경기 내 본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3. 제2호에 따라 「쿨링 브레이크」 시행이 결정되었을 경우, 경기 전 양 팀에게 경기감독관이 시행을 통보한다. <개정 2026.01.27.>
 - 4. 시행 시간은 각급별 조정할 수 있으며, 심판의 재량으로 전, 후반 각 한 차례씩 「2분 전. 후」로 휴식 시간을 갖되 3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기 시간별 권장 시행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권장 시행 시간
전.후반 각 45분 경기	경기 개시 30분 전/후
전.후반 각 40분 경기	경기 개시 25분 전/후
전.후반 각 35분 경기	경기 개시 20분 전/후
전.후반 각 25분 경기	경기 개시 15분 전/후



5. 모든 선수들에게 팀 벤치로 돌아가 수분(물 등) 보충을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6. 휴식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한다.

제30조 (대회 또는 경기 홍보)

- ① 주최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 ② 주최단체는 경기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언론사 및 각종 매체에 홍보한다.

제31조 (보고서 제출)

대회 또는 경기 주최단체는 매 경기가 종료된 후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1급, 2급, 3급 대회 또는 경기(연습경기 제외)
 - 가. Report Form (별지 10. FIFA/AFC Report Form(영문))
 - 나. Referee's Form (별지 7. 심판보고서(국문) 및 별지 10. FIFA/AFC Referee's Form(영문)) <개정 2026.01.27.>
 - 다. List of Players (별지 10. FIFA/AFC List of Players)
 - 라. 경기 기록지 (별지 6. 경기 기록지(국문 및 영문))
 - 마. 사고보고서
 - * 사고 발생 시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은 사고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고, 경기 종료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가, 나, 다, 라 및 마목의 서류를 반드시 매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바. 대회 결과 보고서(별지 8. 대회 결과 보고서)
 - * 대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사.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2. 연습경기
 - 가. Report Form (별지 10. FIFA/AFC Report Form(영문))
 - 나. Referee's Form (별지 10. FIFA/AFC Referee's Form(영문))
 - 다. List of Players (별지 10. FIFA/AFC List of Players)
 - ※ 가, 나, 다목의 서류를 반드시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제32조 (상업적 권리)

- ① 대회 또는 경기의 상업적 권리는 협회와 관련이 없는 경우 대회 또는 경기의 주최 또는, 주관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회가 관할하는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및 경기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아래 표에 명기된 사항 포함)와 관련하여 대회 또는 경기 신청단체는 협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에 따른 구체적 조건은 협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방송중계권, 대회 또는 경기 홍보 및 광고, A보드를 포함한 경기장 장식, 전광판 광고, 경기장 프로 모션, 후원사 선정, 사용구, 음료공급, 유무료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매점운영, 협회로고 및 선수 초상권의 사용, 라이선스 상품의 판매 등

- ③ 국가대표팀이 참가하지 않는 대회 또는 경기라 할지라도 그 상업적 권리가 협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대회 또는 경기 신청단체는 반드시 협회와 상업적 권리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④ U-18 이하 팀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의 경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경기장 내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 ⑤ 대회 또는 경기의 주최 및 주관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상업적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⑥ 해당 대회 또는 경기가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경기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수익금 귀속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⑦ 대회 또는 경기 사용구는 협회 공인구에 한하며, 필요시 협회의 승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6장 국외개최 대회 및 경기 참가 승인

제33조 (참가 승인)

- ① 국외개최 대회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참가 승인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 후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 매년 참가하는 국외개최 대회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의 경우에도 회원은 반드시 FIFA, AFC 또는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4조 (참가 자격 및 절차)

- ① 정관에 명시된 회원에 한하여 대회 또는 경기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각급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 참가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협회와 별도로 협의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 (참가 승인 신청 서류)

- ① 대회 또는 경기 참가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승인 신청 공문
 - 2. 개최국 회원 협회 또는 주최단체의 초청장
 - 3. 대회 규정 (국문 또는 영문)
 - 4. 대회 또는 경기 참가팀 리스트 (국문 및 영문)
 - 5. 참가팀 관할 광역 시도협회 또는 전국연맹 참가 동의서 또는 승인 공문
 - 6. 사업자등록증
 - 7. 필요시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 ② 국외개최 대회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국내 초, 중, 고 및 대학의 팀 또는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 대회 또는 경기 참가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학교장 확인서 또는 학교 측의 승인 공문을 협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참가 승인 신청기한)

- ① 대회 참가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대회 개막 30일 전까지 본 규정 제35조를 참고하여 구비 서류를 협회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② 경기 참가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경기 개막 14일 전까지 본 규정 제35조를 참고하여 구비 서류를 협회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에 보고 없이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 (참가 회원의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 ① 대회 또는 경기 참가 회원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개정 2026.01.27.>
- ② 대회 또는 경기 참가 회원은 대회 또는 경기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 피해 등에 대하여 주최단체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대회 및 경기 참가 승인)

- ① 협회는 참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국제기관(FIFA/AFC)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단체에게 통보한다.
- ② 협회는 필요시 조건부 참가 승인을 할 수 있다.
- ③ 신청단체는 대회 또는 경기 참가 승인을 득한 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관(FIFA 또는 AFC) 및 협회의 추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4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불가항력적인 사항, 규정의 해석 등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6월 28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본 규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국내개최 대회 기준 중 하나인 ‘국외팀 참가 비율 50% 이상 충족’ 조건은 2017년 12월 31일(대회 마지막 경기일 기준)까지 최근 2년간 개최된 대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년 12월 7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1월 23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11월 12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년 1월 27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승인신청서 양식<개정 2026.01.27.>

(대회 또는 경기) 승인 신청서

협회 규정 및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에 따라 (대회 또는 경기) 개최를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또는 경기) 명 :

신청 단체명 :

신청일 :

신청자 : (이름) (서명)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별지2]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

대회 또는 경기 운영 계획서

1. 대 회 명(경기명) :
2. 개최목적 :
3. 기간 :
4. 장소 :
5. 운영단체
 - 1) 주최 :
 - 2) 주관 :
 - 3) 후원 :
6. 참가팀
 - 1) 참가 대상 :
 - 2) 참가 팀 수 :
 - 3) 참가 예상 인원 :
 - 4) 참가팀 지원 :
 - 5) 입상팀 특전 :
7. 대회 또는 경기 방식 : 예) 조별 리그 후 16강 토너먼트
8. 조직위원회
 - 1) 행사소요인력
 - 2) 조직위원회 명단
 - 조직위원장 :



- 부위원장 :
- 임원 :
- 징계위원회 :
- 본부장 :
- 경기담당관 :
- 심판담당관 :
- 지원담당관 :
- 안전담당관 :
- 시설담당관 :
- 의무담당관 :
- 홍보담당관 :
- 수송담당관 :
- 기타 :

9. 재정

1) 예산(안)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예)	금액
		경기감독관비 심판평가관비 심판비 심판장비 출입장비 시설이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자료제작비 의료비 의용역비 홍보비 리셉션비 지원금 보험료 각종수당 축구발전기금 기부금 운영수입비 대회 또는 경기 명칭 사용비 기타운영비	
합계		합계	

2) 수익금 처리계획

10. 시설 계획

1) 경기장 운영 계획

순번	경기장명	잔디형태 (천연/인조)	규격	관중석 (유. 무)
1				
2				
3				
4				
5				
6				

2) 연습구장 운영 계획



3) 부대시설 운영 계획

(본부석, 선수대기실, 심판실, 화장실, 관중석, 미디어석, 음향, 기타 편의시설 등)

4) 숙박시설 운영 계획

- 임원 숙소 배정 : 협회(연맹), 감독관
- 심판 숙소 배정 : 평가관, 심판
- 팀 숙소

11. 안전 대책

- 1) 의료지원 계획 (구급차 배치, 의료인력, 지정병원 선정 등)
- 2) 흑서기/흑한기 대책
- 3) 일반 안전 대책
- 4) 경기장 안전(위험) 시설 점검 대책
- 5) 주차 계획
- 6) 안전인력 운영 계획
- 7) 수송계획

12. 홍보 계획

- 1) 현수막 게첩
- 2) 언론홍보
- 3) TV중계
- 4) 기타

13. 규정 : 첨부



[별지3] 신청자 이행각서<개정 2026.01.27.>

신청자 이행각서

(대회 또는 경기) 명 :

신청 단체명 :

일정 및 장소 :

(대회 또는 경기 명) 개최를 희망하는 신청자 (성명)는 본 (대회 또는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승인 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규정 및 모든 결정, 축구진흥기여금 납부를 포함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대회 또는 경기) 개최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보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 : (서명)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FIFA application form for hosting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 4 par. 4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arts 6, 7 and 10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 Member on whose territory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must obtain prior authorisation from FIFA and the Confederation to which it is affiliated.

The applicant is a FIFA Member and intends to host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on its territory. Consequently, the applicant

.....
(Name of the FIFA Member, herein "the applicant")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to host the following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attach a match schedule and competition regulations.)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such as a FIFA Member or a FIFA match agent, etc. In the case of a third-party match agent, please denote licensing below.)

is a licensed FIFA match agent or is not a licensed FIFA match agent



Teams: 1 2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team details in the match schedule.)

Date:

(Date on which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is to take place.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dicate the dates on the match schedule.)

Referees: 1

2

3

(Full name and nationality of the referee and assistant referee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FIFA International List of Referees.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list all referees and assistant referees on the match schedule. If for any reason the above-named referees are changed, the participating teams must be informed and the reasons documented in a report signed by an authorised Member official and submitted to the Confederation(s) and FIFA.)

Referees assigned by:

Member:

Person responsible:

(List the name(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appointing and assigning the listed referees.)

Stadium:

(Name and location of the stadium to be used for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clude all venues on the match schedule.)

For an International "A" Match or competition, when submitting these documents to FIFA for final authorisation the host Member must include:

- An application form for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for every participating Member
- The authorisation of every Confederation concerned

For an International Match involving a Scratch Team, when submitting these documents to FIFA for final authorisation the host Member must include:

- The authorisation of all Members with which the players involved are registered
- The authorisation of every Confederation concerned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for hosting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Reset Form



FIFA application form for hosting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required for matches or competitions involving multiple Confederations)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 4 par. 4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arts 6, 8 and 11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 Member on whose territory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must obtain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Confederation to which it is affiliated.

The applicant is a FIFA Member and intends to host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on its territory. Consequently, the applicant

.....
(Name of the FIFA Member, herein "the applicant")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to host the following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attach a match schedule.)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such as a FIFA Member or a FIFA match agent, etc. In the case of a third-party match agent, please denote licensing below.)

is a licensed FIFA match agent or is not a licensed FIFA match agent



Teams: 1 2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team details in the match schedule.)

Date:

(Date on which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is to take place.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dicate the dates on the match schedule.)

Referees: 1

2

3

(Full name and nationality of the referee and assistant referee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FIFA International List of Referees.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list all referees and assistant referees on the match schedule. If for any reason the above-named referees are changed, the participating teams must be informed and the reasons documented in a report signed by an authorised Member official and submitted to the Confederation(s) and FIFA.)

Referees assigned by:

Member:

Person responsible:

(List the name(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appointing and assigning the listed referees.)

Stadium:

(Name and location of the stadium to be used for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clude all venues on the match schedule.)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for hosting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that involves multiple Confederations (tick each box):

The host Member herewith submits an application form for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for every participating Member.

The host Member herewith submits the authorisation of every non-host Confederation concerned.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Reset Form

.....
(Signature)



AFC application form for hosting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and 9.2 of the FIFA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contained within Articles 6, 9 and 12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 Member Association on whose territory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must obtain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AFC.

The applicant is an AFC Member Association and intends to host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on its territory. Consequently, the applicant:

(Name of the AFC Member Association)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to host the following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f the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the match schedule and competition regulations shall be attached.)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e.g. a Member Association or a FIFA match agent. In the case of a third-party match agent, please denote licensing below.)

is a licensed FIFA match agent or is not a licensed FIFA match agent

Teams: 1
2
(If the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team details in the match schedule.)

Date:
(Date(s) on which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are) to take place.)

Referees: 1
2
3
(Full name and nationality of the referee and assistant referees. Where available, referees and assistant referees named in the current FIFA International List of Referees are preferred. If the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list all referees and assistant referees on the match schedule. If for any reason the above-named referees are changed, the participating teams must be informed and the reasons documented in a report signed by an authorised Member Association official and submitted to the AFC.)



Member Association:

Person responsible:
(List the name(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appointing and assigning the listed referees.)

Stadium:
(Name and location of the stadium to be used for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If the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clude all venues on the match schedule.)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for hosting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on the territory of the AFC:

The host Member Association hereby submits the application forms for participating in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for every participating Member Association.

(if applicable) The host Member Association hereby submits the authorisation of every non-host Confederation concerned.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Application form for participating in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 6 par. 2 in connection with art. 7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ll International Matches must be authorised by the Members to which the participating teams are affiliated.

The applicant is a FIFA Member and intends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Consequently, the applicant

.....
(Name of the FIFA Member, herein "the applicant")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following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such as a FIFA Member or a FIFA match agent, etc.)

on the territory of:

Member:
(Name of the FIFA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Teams: 1 2

(Name of the teams participating in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only your team.)

Date(s):

(Date on which the tier 1 International Match is to be played.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dicate the dates.)

Head of delegation:

.....
.....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head of delegation. The head of delegation shall be a natural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official travel delegation of each team of the Member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federation to which the Member is affiliated at least 21 days before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question.

Once authorisation has been granted by the Confederation, the Member shall submit this form and the authorisation of the Confederation to which it is affiliated to the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planned.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Reset Form



Application form for participating in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required for matches or competitions involving multiple Confederations)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 6 par. 2 in connection with art. 8 of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ll International Matches must be authorised by the Members to which the participating teams are affiliated.

The applicant is a FIFA Member and one of its affiliated teams or clubs intends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Consequently, the applicant

.....
(Name of the FIFA Member, herein "the applicant")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for one of their affiliated teams to participate in the following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such as a FIFA Member or a FIFA match agent, etc.)

on the territory of:

Member:
(Name of the FIFA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Teams: 1 2

(Name of the teams participating in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only the team(s) or club(s) affiliated to your association.)

Date:

(Date on which the tier 2 International Match is to be played.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please indicate the dates.)

Head of delegation:

.....
.....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head of delegation. The head of delegation shall be a natural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official travel delegation of each team of the Member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federation to which the Member is affiliated at least 21 days before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question.

Once authorisation has been granted by the Confederation, the Member shall submit this form and the authorisation of the Confederation to which it is affiliated to the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planned.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FIFA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
.....

(Place and date)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Reset Form



AFC application form for participating in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and 9.2 of the FIFA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contained within Articles 6, 9 and 12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all teams affiliated to a Member Association who wish to participate in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must receive the authorisation of that Member Association.

The applicant is a FIFA Member and one of its affiliated teams or clubs intends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Consequently, the applicant:

.....
(Name of the FIFA Member Association)

submits the following

Authorisation request for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n order to participate the following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e.g. a Member Association or a FIFA match agent.)

on the territory of:

Member Association:
(Name of the FIFA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Teams: 1
2
(If the request relates to a competition, include team details in the match schedule.)

Date:
(Date(s) on which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are) to take place.)



**Head of
Delegation:**

.....
.....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head of delegation, who shall be a natural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official travel delegation of each team of the Member Association participating in the tier 3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For tier 3 International Matches or competitions played on the territory of the AFC,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to the host Member Association to be submitted to the AFC in compliance with Article 12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For all tier 3 International Matches or competitions play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federation,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to the AFC in compliance with Article 12 of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Once authorisation has been granted by the AFC, the Member Association shall submit this form and the authorisation of the AFC to the FIFA Member Association on whose territory the International Match or competition is to be played.

The signatory hereby explicitly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별지6-2] 경기기록지 국문2 (성인 클럽팀용)

대회명	주최	일시	경기장	날씨	경기번호							
	부심1	부심2	대기심	경기감독관	관중수							
팀명 : (HOME) 유니폼 상의 : 하의 : 양말 :			팀명 : (AWAY) 유니폼 상의 : 하의 : 양말 :									
구분	전반 상황	후반 상황	교체 시간	배번	선수	배번	선수	교체 시간	배번	구분	전반 상황	후반 상황
FO										FO		
OS										OS		
CK										CK		
ST										ST		
경고 : 감독 : 퇴장 :						경고 : 감독 : 퇴장 :						
시간	득점자	득점 상황				시간	득점자	득점 상황				
		득점 상황						득점 상황				



[별지7-1] 심판보고서 국문



심판보고서

전화 : 02)2002-0787

팩스 : 02)2002-0760

대회명					지역 및 권역			경기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기장소	-					
대진 및 결과	홈팀 : _____				어웨이팀 : _____						
					전반						
				후반							
※ 심판 점검 의무 사항 : KFA 등록증(AD카드) 및 참가신청서, 경고 2회선수, 유급선수 연령초과자 경기 감독관에게 확인 후 기재 교체선수는 KFA선수등록증(AD카드) 및 참가신청서 확인 후 출전											
심판	주심				제1부심			대기심			
	2주심				제2부심						
득점	홈팀						어웨이팀				
	시간	배번	성명			시간	배번	성명			
교체	홈팀						어웨이팀				
	시간	IN		OUT		시간	IN		OUT		
		배번	성명	배번	성명		배번	성명	배번	성명	

	홈팀				어웨이팀			
	시간	배번	성명	사유	시간	배번	성명	사유
경고								
퇴장								

보고사항	윤리규정/심판규정 (금품수수, 승부조작, 청탁 등)	
	경기 관련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판 : (성명) _____ (서명) _____

사단법인 대한축구협 귀중(심판분과위원장)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Referee's Report

9. Goalscorers

No.	Name of Player	Jsy No.	Time	Team
1				
2				
3				
4				
5				
6				
7				
8				
9				
10				

10. Substitutions

No.	Player In	Jsy No.	Player In	Jsy No.	Time	Team
1						
2						
3						
4						
5						
6						
7						
8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Referee's Report

11. Cautions

No.	Name of Player	Jsy No.	Time	Team	Reas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Sent-Off

No.	Name of Player	Jsy No.	Time	Team	Reason
1					
2					
3					
4					
5					
6					
7					
8					

No.	Name of Team Official	Jsy No.	Time	Team	Reason
1					
2					
3					
4					
5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Referee's Report

13. Incidents:

The referee must state the reasons and circumstances of any incidents connected or not connected with the match even if it should have taken place before or after the match & during half-time. Please report if the match did not start on time & how long was the delay & give reasons. Please report the condition of the field, if necessary.

.....
.....
.....
.....

14. Supplementary Report (Report on direct sent-off of Players & dismissal of Team Officials)

.....
.....
.....
.....

15. Match Start on Time (Yes / No):

.....
(Name)

.....
(Signature)

.....
(Country)

.....
(Date)



[별지8] 대회 결과 보고서

대회 결과 보고서

구 분	내 용
1. 대 회 명	
2. 기 간	
3. 장 소	
4. 주 최	
5. 주 관	
6. 후 원	
7. 참가팀 수	
8. 대회방식	
9. 대회예산	가. 총 수입액 :
	나. 총 지출액 :
10. 시상내역	가. 단체상 (Team)
	나. 개인상 (Individual)

구 분	내 용
11. 대회평가	<p>가. 경기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운영(각 경기장별) 2) 문제점 및 보완점 3) 기타사항
	<p>나. 시설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장(잔디 및 지면상태 등) 2) 부대시설(경기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3) 문제점 및 보완점 4) 기타사항
	<p>다. 의무(의료반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운영 2) 구급차운영(응급장비 보유현황) 3) 경기장과 근거리 내 지정병원 4) 문제점 및 보완점 5)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11. 대회평가	<p>라. 경기장 안전 및 질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운영 2) 문제점 및 보완점 3) 기타사항
	<p>마. 홍보/ 흥행(관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방법 2) 평균관중 수 3) 문제점 및 보완점 4) 기타사항
	<p>바. 기타사항</p>

구 분	내 용
12. 대회총평	가. 문제점
	나. 개선사항
	다. 총평



[별지9]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및 협회파견직원 파견비용 기준표

1. 협회파견직원

구 분	수당(1일)	숙박비(1박)	식비(1식)	일비	교통비
경기 및 대회	150,000원	* 대한축구협회 처무 규정에 의거			

* 대회 주최가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국제대회에 파견 요청을 받아 업무를 배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파견요청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 경기감독관

구 분	수당(1일)	숙박비(1박)	식비(1식)	일비	교통비
경기	각급 대표팀	* FIFA/AFC에서 파견한 경기감독관은 FIFA/AFC 규정에 따라 지급 * 대한축구협회에서 파견한 경기감독관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예산 지침 내 경기감독관 여비 지급표 및 수당 지급표에 따라 지급			
	성인 클럽팀				
대회	초중고 대회/경기				

3. 심판 및 심판평가관

구 분	주심	부심	대기심	Other Expenses	심판평가관	숙박	식비		
연습경기	U12(초)	초중고 주말리그 금액 적용			-	해당리그 부심금액 동일	60,000원	9,000원	
	U15(중)								
	U18(고)								
	U23(대)								U리그 금액 적용
	그 외								K3리그 금액 적용
국내 친선 경기 및 대회	각급 대표팀	\$ 300 /day			\$ 100	\$ 200 /day	호텔 1인1실	호텔뷔페	
	성인 클럽팀	TIER2	2,000,000원	1,100,000원	500,000원	-	400,000원	호텔 1인1실	호텔뷔페
		TIER3	1,000,000원	550,000원	250,000원	-	300,000원	60,000원	9,000원
	초중고 대회/경기	150,000원/일			20,000원/일	150,000원/일	60,000원	9,000원	
- 연습경기의 경우 각 리그 수당 기준 준용(단, 교통비는 거리기준표 기준 별도 지급) - 연습경기가 아닌 "친선경기"라 함은, 스폰서/TV 중계/티켓 판매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를 뜻함 - 숙박/식비를 4성급 이상 호텔에 준하여 진행해야하는 경우: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 대회/경기의 경우 체류기간 전일 수당 지급 - 대회/경기 일비(other expenses)의 경우 별도의 이동 차량 제공 시 지급에서 제외 ※ 국내 심판의 교통비는 기준표에 따라 별도 지급 - 국가대표/U23경기의 경우 FIFA/AFC기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 환율은 입국일 또는 경기날 환율 기준을 적용하되, 해외송금의 경우 입금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AFC	챔피언스리그	\$ 300 /day			\$ 100	\$ 300 /day	호텔 1인1실	호텔뷔페	
	그 외(cup 등)								
토너먼트 예선	올림픽	\$ 500 /day	\$ 350 /day	\$ 350 /day	추가경비	\$ 200 /day	개최지 제공	개최지 제공	
	월드컵	\$ 500 /day	\$ 350 /day	\$ 350 /day	추후 정산	\$ 200 /day	호텔 1인1실	호텔뷔페	
기타	(1) FIFA 본선대회 파견 심판은 추가 보너스 지급 (2) 호텔 뷔페가 제공되는 대회의 경우 현지식은 호텔 뷔페에 준한 요금으로 제공								

※ 파견비용은 다양한 경기 형태에 따라 지정된 기준 외에 대회 주최 측과 합의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별지10] AFC Report Form 및 AFC List of Players A/B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Report Form

Preamble:

In accordance with Art. 13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the AFC Member Association on whose territory a Tier 2 International Match has been played shall provide the AFC General Secretariat with the Report Form, List of Players and Referee Report within forty-eight (48) hours after the match.

In accordance with Art. 13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the AFC Member Association on whose territory a Tier 3 International Match has been played shall provide the AFC General Secretariat with the Report Form, List of Players and Referee Report within the deadline set by the AFC.

Accordingly, the following

REPORT

i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AFC General Secretariat.

Description:

(Description/Name of th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Date:

(Date on which th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took place)

arranged by:

Name:

(Nam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arranging, promoting and staging th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between the following:

Team A: Team B:

(Name of the teams participating in th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inal Score: :

(Final score of th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Referee: Country:

Asst Referee 1: Country:

Asst Referee 2: Country:

4th Official: Country:

5th Official: Country: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Report Form

The signatory confirms the accuracy of the aforementioned stat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fulfil the conditions of Art. 13 of the AFC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atches, the signatory confirms that the following additional documents have been attached (*tick each box*):

- A list of players for each team, signed by the respective Team Administrator; and
- The referee's report, signed by the match referee.

.....
(Name of the Hosting Member Association)

.....
(Place and date)

.....
(Name and position of the signatory)

.....
(Signature)

This form shall be faxed to the AFC General Secretariat and e-mailed to:
afcim@the-afc.com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List of Players – Team A

1. Team A: Team B:
 2. Played In (City): Date: Time:
 3. Stadium Country:

4. **TEAM A**

	No.	Pos	C	Surname	First Name	Date of Birth (DD / MM / YY)
Outfield Players		GK				
Substitutes						

GK – Goalkeeper / D – Defender / M – Midfielder / F – Forward / C – Captain

5. Name of the Coach

Team Administrator

..... (Name) (Signature)



TIER 2 OR TIER 3 INTERNATIONAL MATCH (FOOTBALL)



List of Players – Team B

1. Team A: Team B:

2. Played In (City): Date: Time:

3. Stadium Country:

4. **TEAM B**

	No.	Pos	C	Surname	First Name	Date of Birth (DD / MM / YY)
Outfield Players		GK				
Substitutes						

GK – Goalkeeper / D – Defender / M – Midfielder / F – Forward / C – Captain

5. Name of the Coach

Team Administrator

.....
(Name)

.....
(Signature)